

# 국내여객운송약관

##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2022년 6월 28일 발행  
ISSUED ON JUN 28 , 2022



#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제 1 조	정 의 .....	3
제 2 조	약관의 적용 .....	4
제 3 조	약관 등의 변경 .....	4
제 4 조	비 치 .....	4
제 5 조	여객의 동의 .....	4
제 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4
제 7 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	5
제 8 조	항공권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	5
제 2 장	여 객 .....	6
제 9 조	항공권의 발행 .....	6
제 10 조	항공권의 유효성 .....	6
제 11 조	유효기간 .....	6
제 12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	6
제 13 조	무임 및 할인 .....	7
제 14 조	2 개 이상 좌석 사용시의 운임 .....	7
제 15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	8
제 16 조	예약 및 사전 좌석 배정 .....	7
제 17 조	여정 변경 .....	8
제 18 조	여객의 공항 도착 .....	8
제 19 조	운송 거절, 제한 등 .....	8
제 20 조	부정 탑승 .....	10
제 21 조	환 불 .....	10
제 2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취소위약금 .....	11
제 3 장	수하물 .....	12

제 23 조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	12
제 24 조	수하물의 운송.....	12
제 25 조	수하물의 내용조사.....	12
제 26 조	수하물로서의 운송제한 물품 .....	12
제 27 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	12
제 28 조	기내 휴대 수하물.....	13
제 29 조	초과 수하물 요금.....	13
제 30 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	13
제 31 조	특정 동물의 운송.....	13
제 32 조	종가요금 .....	14
제 33 조	종가요금의 환불.....	14
제 34 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14
제 35 조	수하물표의 분실.....	15
제 36 조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156
제 4 장	책 임 .....	16
제 37 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16
제 38 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	17
제 39 조	여객의 배상책임.....	19
제 40 조	제소기한 .....	19
제 41 조	약관의 정보 .....	19
제 42 조	표 제 .....	19

## 제 1장 총 칙

### 제 1조 정 의

1. 이 약관에서 “국내운송”이란, 유상 또는 무상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이 약관에서 “태리프”란, 진에어가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약관에서 “항공권”이란, 주식회사 진에어(이하 “진에어”라 칭한다) 또는 진에어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국내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진에어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증표 또는 종이증표를 말한다.
5. 이 약관에서 “통상운임”이란, 할인되지 않은 여객 운임을 말한다.
6. 이 약관에서 “수하물”이란, 여객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7. 이 약관에서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진에어가 접수하고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8. 이 약관에서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9. 이 약관에서 “초과 수하물”이란, 진에어가 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10. 이 약관에서 “수하물표”란, 위탁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진에어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1. 이 약관에서 “초과 수하물표”란, 초과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진에어가 발행한 전자증표 또는 종이 증표를 말한다.
12. 이 약관에서 “단체여객”이란, 사전에 동일단체로 예약이 신청되고 동시에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3. 이 약관에서 “성인”이란,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4. 이 약관에서 “소아”란,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5. 이 약관에서 “유아”란,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6. 이 약관에서 “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한다.

## 제 2조 약관의 적용

1. 이 운송약관은 진에어의 국제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선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이 적용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의 여행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른다.
4. 무상운송에 관하여 진에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운송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제 3조 약관 등의 변경

진에어의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약관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조항이 변경 전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4조 비 치

진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은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임, 요금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5조 여객의 동의

1. 여객은 진에어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제 2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운송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또한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소송 절차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다.

**제 7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승강,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 및 수하물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진에어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항공권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에 진에어의 고의 및 중과실에 따른 오기 누락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진에어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진에어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진에어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 나. 예약 시 진에어는 여객에게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 조건 및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변경 가능 기간 등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예약 후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을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진에어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지연 및 취소

- 가. 진에어는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 나. 진에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에어는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을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진에어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진에어는 관련 운송약관, 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기상조건, 천재지변, 운송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기기의 고장,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 (3)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 (4) 노동력, 연료 또는 설비의 부족, 진에어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문제 등의 경우

## 제 2장 여 객

### 제 9조 항공권의 발행

1. 진에어는 여객이 소정 운임 또는 요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진에어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2.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3.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성명, 성별, 연락처, 국적,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진에어에 제공해야 한다.

### 제 10조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항공권은 항공권상에 표시된 운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3. 탑승용 쿠폰상의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정보를 기재·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만 유효하다.

### 제 11조 유효기간

운임 규정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여객의 운송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시 운송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기간의 연장도 불가하다.

### 제 12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 운임 및 요금은 진에어에서 별도로 정한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2.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여행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3. 지불된 운임 또는 요금이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4.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 또는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의 단수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할인 적용 시 100원 미만의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 13조 무임 및 할인

1. 성인에 의하여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성인 1인당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또는 성인 1명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는 운임 적용 시 소아로 간주한다.
3. 개인 여객은 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대상 및 할인율표에 의거하여 성인 통상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은 탑승 이전에 진에어에 정당한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탑승 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다.
4. 10명 이상 단체여객은 탑승 구간, 일자, 시간에 따라 진에어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 하에서 운임 및 요금을 협의할 수 있다.

### 제 14조 2개 이상 좌석 사용시의 운임

여객이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2개 이상의 좌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좌석 1석 당 당해 탑승구간에 공시된 통상운임 100%를 부과한다.

### 제 15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진에어가 정한 운임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2.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항공사가 정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항공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의 기타 요금 또한 같다.

### 제 16조 예약 및 사전 좌석 배정

1. 여객의 좌석 예약은 항공권상에 확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당해 예약이 유효하다. 여객이 예약 신청 후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경우, 당해 예약은 탑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 없이 취소된다.
2.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진에어는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탑승구간 및 탑승일자가 동일한 경우

나. 탑승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상기 가. 및 나.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예약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 또는 항공편의 경우에는 제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여객 및 그의 수하물 운송을 인수한다.
- 4. 동일 일자 동일 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은 별도 요청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다.
- 5.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항공기 내 특정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여정변경**

-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탑승 예정편 출발 이전에 진에어 또는 대리점에 당해 변경이 요청되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서 변경한다.
- 2. 여객 측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진에어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여객의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예정 기항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진에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여객 및 수하물을 좌석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운송수단으로 운임 추징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거나,
  - 나. 여객 요청에 따라 여행일자, 항공편 또는 여정을 변경하거나,
  - 다. 이 운송약관 제 21조 3항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한다.

**제 18조 여객의 공항 도착**

- 1. 여객은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http://www.jinair.com) 또는 e-티켓 확인증에 별도 고지한 탑승수속 마감 시간 전까지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위탁을 마쳐야 한다. 진에어는 마감 시간 전까지 탑승 수속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2.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수속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소정 출발 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진에어는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 이 운송약관 제 21조 제 2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9조 운송 거절, 제한 등**

- 1. 운송 거절 권리
  - 가. 진에어는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에는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진에어는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 할 수 있다.

- (1)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진에어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4)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5)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항공사가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 (6)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진에어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7)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8)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진에어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초과 판매 및 진에어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경우, 진에어는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에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운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단,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진에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진에어는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진에어는 운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마. 위의 가. 호 내지 라. 호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하기(下機)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 21조 제 3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진에어는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

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하에서 그의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진에어는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항공사에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3. 기내에서의 행위

가. 진에어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 복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나. 위의 가. 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전자기기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20조 부정 탑승**

다음의 경우는 부정탑승 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 1.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부당하게 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제 21조 환 불**



1. 미사용 유효 항공권은 다음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 가. 환불 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이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진에어는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진에어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환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다. 환불은 항공권의 명의인 또는 환불받을 권한이 있다고 진에어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체크카드(Debit Card)로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카드 계좌로 환불한다.
-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진에어는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운임 전액에서 제 22조에 의한 취소위약금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운임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3.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진에어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예약된 좌석의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결 불가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 기항지의 생략, 또는 이 운송약관 제 8조 및 제 19조의 사유 발생시는 아래에 의거, 환불을 행한다. 단 제 8조 1항 및 제 19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가.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 나. 항공권상에 명시된 목적지로 운송 도중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당해 취소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제 22조 예약의 사전 취소 및 취소위약금**

- 1. 본인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진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예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 2.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제 1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진에어가 별도로 규정한 취소위약금을 징수한다.

## 제 3장 수하물

### 제 23조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여객이 진에어 공항사무소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경우에 이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에어는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운송한다.

### 제 24조 수하물의 운송

위탁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문제 또는 진에어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하물을 타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 제 25조 수하물의 내용조사

항공 보안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에어는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 3자의 입회 하에 조사할 수 있다.

### 제 26조 수하물로서의 운송제한 물품

1. 진에어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 가.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 이동이 금지된 물품
  - 나. 항공기 탑승인원 또는 기타 재산에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다. 운송도중 파손되기 쉽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2.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위탁수하물로서 운송할 수 없다.

### 제 27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1. 위탁수하물은 일반석은 일인당 15 킬로그램(33 파운드)까지, 지니비즈석은 30 킬로그램(66 파운드)까지를 무료로 운송한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여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며, 세변의 합이 115cm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이하 및 중량 10kg(22파운드) 이하인 1개에 한하여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3.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 또는 유, 소아용 카시트 1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4. 이 운송약관 제 13조 제 1항에 정한 유아에 대하여는 본 조항 및 제 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 또는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

트 1개에 한하여 무료 운송이 허용된다.

### 제 28조 기내 휴대품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여객이 보관하는 경우에 제 27조 2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 가. 노트북 컴퓨터 1개
  - 나. 서류 가방 1개
  - 다. 핸드백 혹은 화장품 가방 1개
  - 라.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 마.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 바. 신체 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류
2. 상기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항공사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 제 29조 초과 수하물 요금

1. 제 27조에서 규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지불하는 경우 킬로그램당 한화 2,000원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한다.
2. 초과수하물 총 중량 산정시 1 킬로그램 미만 0.5 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 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 30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 항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개시 전에 여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 제 31조 특정 동물의 운송

1. 시각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 무료 운송한다.
  - 가.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

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의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수하물로서 운송이 가능하다.

가.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조류에 한한다.

나. 반려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다. 진에어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용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에어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 제 32조 종가요금

여객은 위탁 수하물의 가격이 상법에서 명시된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여객이 가격 신고 시에는 상기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0원 당 또는 그 단수액에 대하여 5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요율로 종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1인당 신고가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을 거절한다.

### 제 33조 종가요금의 환불

1. 진에어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개시 전에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 제 34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운송을 위해 진에어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진에어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단,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지점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3. 진에어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치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진에어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하물 인도 시,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5조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진에어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 하에서만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제 36조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주일을 경과해도 여객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진에어는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 제 4장 책 임

### 제 37조 여객운송에 대한 책임

1. 진에어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진에어는 제 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 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3. 진에어는 제 1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그 손해가 진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 나. 그 손해가 오로지 제 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4. 진에어는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진에어가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5. 제 4항에 따른 진에어의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000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6. 진에어는 위탁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 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진에어는 휴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휴대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이다.
8. 진에어는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진에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9. 진에어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진에어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진에어가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10. 제 6항 내지 제 8항에 따른 진에어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288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이 운송약관 제 32조에 의거하여 증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진에어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진에어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1. 제 5항 또는 제 10항은 진에어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여객의 연착이 생길 염려 내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진에어가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진에어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진에어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14. 제 2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정한 진에어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진에어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진에어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5. SDR 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16. 여객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정보를 진에어에 제공하여야 하며, 진에어는 법규 준수를 위하여 여객이 제공한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여객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제공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종 책임은 여객에게 있으며,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진에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38조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1.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진에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 제 1 항과 제 2 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객은 진에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제 39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진에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객은 당해 손해를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40조 제소기한**

진에어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진에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41조 약관의 정본**

진에어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 42조 표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